

정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시책만으로는 전국토의 65%인 광활한 산림을 지켜 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산을 사랑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국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언론 및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 3. 금후추진대책

- '92.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도 산림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지구·산림문제해결을 위해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된 바 있으며,
- 산림청은 『산림원칙성명』에서 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이 지닌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산림법의 개정 및 관련시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는 한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림환경보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언론 및 민간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오니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로 아름다운 우리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 영 정 보

# 대목 굴취이식 활용

자료:산림청

## 1. 목 적

- 산림의 형질변경지나 수종갱신 대상지에서 베어낸 나무와 인공조림지의 밀생 임목중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환경 조림용으로 활용함으로써,
- 버려지는 폐자원의 활용과 육림 촉진을 도모하고 산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

## 2. 방 침

- 산림경영상 폐기될 수목의 적극적

## 활용

- 각종 산림의 형질변경지에서 제거될 수목
- 수종갱신 대장지에서 정리작업시 벌채될 수목
- 기왕 조림지의 밀생임분에서 슈아낼 대상목
- 대상목은 경관 및 환경파괴등 물의가 없도록 엄선
- 굴취적지는 임지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

### 3. 추진요령

#### 가. 대상지 및 대상수목

구 분	대 상 지	대 상 목	유 의 사 항
형질변경지	타용도전용 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협의(의제)된 임지중 형질변경 확정 구역내	조경가치가 있는 모든 수종	수목굴취를 위하여 형질변경 구역의 확대나 구역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함
수종갱신지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허가 또는 영림계획 사업 신고된 임지	산림경영상 존치하여야 할 우량목을 제외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수종갱신을 빙자하여 갱신대상지가 아닌 곳을 선정하거나 산림경영상 존치되어야 할 유용목을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인공조림지	기왕 조림지중 육림차원에서 속아내기가 필요한 임지로서 - 수형과 수목의 크기가 조경수나 관상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 - 굴취 및 운반이 용이하며 - 토질이 분뜨기가 될 수 있는 지역	속아낼 수목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존치할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선정

#### 나. 대상지 확정

구 분	국 유 립	민 유 립
형질 변경지	수허가자의 신청지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적정 여부를 현지확인하여 확정	산주(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군수(녹지과장·산림과장)가 현지 확인후 확정
수종 갱신지	관리소장이 대상지를 확인하여 결정	"
인공 조림지	"	"

※ 수목굴취로 인한 물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언론기관·환경단체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물의가 없도록 조치

다. 굴취 제한지

- 병해충 피해지  
형질변경지나 수종갱신지라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에서는 굴취·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미리 수간주사등의 방법으로 완전 구제했거나 인근에 가식하여 구제한 후 道 산림환경연구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경관 보전지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 변경제한지역 및 기타 경관 보전상 굴취합이 부적합한 지역. 다만, 형질변경이 허가된 곳이나 인공조림지는 예외로 한다.

- 급경사지 및 석력지등  
나무 생육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임분구성이 어렵고 또한 수목굴취나 운반, 복구등의 조건이 급경사지 및 석력지등. 다만, 형질이 변경될 곳은 예외로 한다.

라. 굴취목 선정 및 표시

구 분	굴 취 목 선 정	굴 취 목 표 시
형질 변경지	조경가치가 있는 모든 수목	굴취목은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 또는 “비닐”로 둘러 묶어 둔다.
수종 갱신지	산림경영상 존치하여야 할 우량목을 제외한 베어낼 나무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	굴취목은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 또는 “비닐”로 둘러 묶고, 존치하여야 할 유용목은 노란색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인공 조림지	임상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 열식굴취 : 1열굴취 1열존치 1열굴취 2열존치 ○ 교호굴취 : 식재열별로 서로 어긋나게 선정	굴취목은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 또는 “비닐”로 둘러 묶어 두되 다만, 열식굴취인 경우 존치열에는 첫나무에만 노란색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굴취열에도 첫나무에만 흰색 “천” 또는 “비닐”로 표시토록 한다.

※ 굴취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다.

※ 인공조림지에서 굴취할 경우는 굴취하여도 기존의 주변 임목이나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선정(임상파괴방지) 한다.

마. 굴취방법

- 분직경 : 근원경의 3 ~ 5배  
(수중에 따라 5 ~ 10배)
- 분의 깊이 : 근원경의 3 ~ 5배
- 분은 새끼로 묶거나 마대등으로 싸아 깨어지지 않도록 함.

※ 기타 자한 기술적인 사항은 수목굴취 요령을 참고

바. 인력 활용(기능인 작업단 활용 방안)

산림사업이 없는 기간(동절기)에 기능인 작업단을 활용하므로써 작업단의 고용 안정 도모  
 다만, 대목 굴취·이식에 따른 뿌리돌림등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수목굴취 전문가와 사전 협의의 및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

사. 임지별(국·민유림) 추진요령

- 국유림(영림서 관리소)  
- 굴취목의 수요, 굴취 인력, 작업량 등을 감안 다음 방법으로 추진

① 직영사업

- 각 관리소별로 작업단을 활용 이식 가능한 임지에 대하여 최대한 실시
- 굴취목은 관내 산림 또는 시설 부지중 식재적지는 최대한 이식(정식)토록 하고 그외 생산량은 야산 또는 포지에 가식하여 육성하였다가 매각 또는 식재 활용
- '96 이식 대상지는 '95. 12중에 대상지 선정을 하였다가 내년도 춘기에 이식작업 실시

② 굴취대상 입목매각:영림서 관리

소장이 대상지 선정 및 매목 조사후 매각

- 민 유림(시·군, 임협)  
-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군수(녹지과장, 산림과장) 허가 및 지도·감독  
- 산주가 자본, 기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임협에서 대행

※ 임협에서는 작업단, 양묘장, 직관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생산·운반·판매등 자체계획 수립 추진

4. 적지복구

경관의 저해 및 산림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굴취·반출하되 굴취후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요령”에 의거 굴취직후 완벽하게 복구하여 경관저해, 토사 유출등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굴취목 반출

- 굴취자가 굴취한 수목을 반출하고자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굴취 적지가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생산 확인표』를 발부한다.(수목굴취 요령 참조)
- 포지에 가식하였다가 반출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관상수목 자가 생산 허가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한다.(내무부 예규 참조)

6. 기 타

본 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수목굴취 요령(산림청예규 제376호)에 의한다.